

##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3
----------	---

제출연월일 : 2202년 월 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 1. 제안이유

- 행정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인터넷 시스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제3조)

-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항
- 홈페이지 게시자료 규정 및 운영부서, 관리부서 지정

나.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제6조)

-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게시자료 삭제 근거 마련

다.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사이버민원실 및 참여마당을 운영함(제8조, 제13조)

라. 공무원과 주민대상 전자우편 ID 보급과 외국어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4조, 제15조)

3. 의안전문 : 별첨

4. 관계법령 발췌 : 별첨

## 충청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도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증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 "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6.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 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인터넷시스템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포함한다.

1. 도의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의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의 제공
3. 사이버 민원실의 운영
4. 도지사와의 대화방 및 게시판 등 주민 참여공간의 운영
5. 전자우편 ID 이용
6. 국내·외에 도의 홍보
7.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한 정보의 제공 등

③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와 분야별담당·관리부서를 지정 및 운영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④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의 장(이하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보안 및 유지관리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인터넷시스템은 통합 구축·관리하고, 분야별로 별도 구축·관리하는 경우는 사전에 시스템운영부서의 장 및 홈페이지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관리) ①관리부서의 장은 게시된 정보가 최신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②분야별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최신의 정보를 게시·관리하고,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명시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담당자의 비밀번호는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게시자료 관리) ①관리부서의 장은 게시자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건전한 운영·발전을 위하

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7조(자료제공) 이용자가 수록된 자료에 대하여 요청이 있을 경우 비영리 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장 사이버 민원실 운영

제8조(사이버 민원실 설치·운영) ①인터넷으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운영한다.

②사이버 민원실은 인터넷 민원접수 및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고, 민원사무는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한다.

③민원담당부서의 장은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기준표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9조(인터넷 민원접수) ①인터넷 대상민원은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도지사가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 제10조(민원처리 공개) ①도지사는 공개대상 민원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②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 처리과정 및 처리결과의 전과정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 ④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고,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4장 홈페이지 주민참여

- 제12조(도지사와의 대화방 운영) ①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도지사와의 대화방을 운영한다.
- ②도지사와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고,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한다.

제13조(참여마당 운영) 도지사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제시 및 교환을 위하여 참여마당을 운영한다.

## 제5장 전자우편 ID 보급

제14조(전자우편 ID보급) ①도지사는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지역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고, 보급 및 운영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전자우편 ID보급·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주민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 제6장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제15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국외에 도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및 통상정보 등을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③도지사는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고,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 제7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제16조(개인정보보호) ①도지사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②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DB는 필요시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제17조(시스템 안전대책) ①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정보를 주기적으로 복사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 지도록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第15條 (條例) 地方自治團體는 法律의 범위안에서 그 事務에 관하여 條例를 制定할 수 있다. 다만, 住民의 權利制限 또는 義務賦課에 관한 사항이나 罰則을 정할 때에는 法律의 委任이 있어야 한다.

###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2. "個人情報"라 함은 生存하는 개인에 관한 情報로서 당해 情報에 포함되어 있는 姓名·住民登錄番號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識別할 수 있는 情報(당해 情報만으로는 특정개인을 識別할 수 없더라도 다른 情報과 용이하게 結合하여 識別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31조 (비밀번호 관리) ① 비밀번호는 단말기의 무단사용 방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 사용하여야 한다.

1. 비인가자의 단말기 접근방지를 위한 단말기 확인용 비밀번호(1차)
2. 단말기 취급자가 인가된 인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취급자 비밀번호(2차)
3. 소관업무 외에는 열람 및 출력을 제한할 수 있는 업무별 또는 자료별 비밀번호(3차)

② 자료별 비밀번호는 비밀이나 중요자료에는 필히 부여하되, 공개 또는 열람 자료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비밀번호는 다음 각호 사항을 반영하여 숫자와 문자 등 6자리 이상으로 정하고, 시스템관리자는 원 1회 이상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사용하기 위한 조치를 시스템에서 제공해야 한다.

1. 사용자계정(ID)과 동일하지 않은 것
2. 개인 신상 및 부서명칭·전화번호 등과 관계가 없는 것
3. 일반 사전에 등록된 단어는 사용을 피할 것

- 4. 동일단어 또는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말 것
  - 5. 사용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말 것
  - 6. 동일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하지 말 것
- ④ 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비밀번호는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비밀번호를 기록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9호 서식 비밀번호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